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25호 2022. 8. 10.(수)

【조 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3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3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3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4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2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41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도모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국어책임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공문서, 공공기관, 광고물 등 언어 사용 규정(제5조 ~ 제7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명시(제8조) ○ 의견 청취 및 예산·포상에 대한 사항 규정(제9조 ~ 제1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8.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37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 및 연수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연수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 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서류, 누리집 등 각종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 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항
5.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 (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5조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구청장은 구 본청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2019. 5. 9.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 1, 2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정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제4조제7항) ○ 금고지정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범위 정비(제4조제8항) ○ 수의방법 금고지정에 관한사항 정비(제6조제5항) ○ 조 제목 정비(제8조) - (금고의 중도해지) → (금고약정의 해지)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별표 1,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8.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38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주민”을 “구민”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사항

제4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심사” 를 “심의”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계약” 을 각각 “약정” 으로 한다.

제8조 제목 “(금고의 중도해지)” 를 “(금고약정의 해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금고” 를 “금고” 로,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5	
	소 계	8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2 2	
	소 계	21	
3. 구민이용 편의성	소 계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7 5 6 3	
	소 계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2	
	소 계	24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소 계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5 2	
	소 계	7	
6. 그 밖의 사항	소 계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2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모든 세부항목별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 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구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 (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OCR 센터 등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그 밖의 사항(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 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광역시 연수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기 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 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그 밖의 ----- ----- ----- -----.
제3조(금고 지정기준) ① (생 략) 1. (생 략) 2. <u>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u> 3. <u>지역주민이용 편의성</u> 4.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3조(금고 지정기준) ① (현행 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u> ----- 3. <u>구민</u> ----- 4.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의 사항</u>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⑥ (생 략) ⑦ <u>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 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⑧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정절차)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 ② (생략)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구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⑧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정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심의-----

-----.

<삭 제>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약정----, 약정 -----, -----

-----.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

현재의 <u>구금고</u>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 발생시 <u>지체없이</u>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u>기타</u>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u>금고</u>----- ----- ----- <u>지체 없이</u>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그 밖</u>의 ----- -----. 제11조(시행규칙) ----- <u>필요</u>----- -----.
---	---

현행			개정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1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2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21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신설>	2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1	3. 구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7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6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3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라. OCR 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 능력 및 계획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소 계	9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
<신설>			6. 그 밖의 사항	소 계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현행	개정안
[별표 2] <u>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u> (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 3. (생략)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평가기준 - (생략) ○ 평가방법 - (생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점) ○ (생략)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생략)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점) ○ (생략)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생략)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생략) <신설>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점) ○ 지역주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6점) ○ (생략)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7점) ○ (생략)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생략) 4.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별표 2] <u>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u> (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 3. (현행과 같음)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현행과 같음) ○ 평가방법 -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현행과 같음)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현행과 같음)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현행과 같음)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현행과 같음)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현행과 같음)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2점) 3. 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현행과 같음)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6점) ○ (현행과 같음)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생략)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 (생략)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7점)

○ (생략)

라.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4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신설>

○ (현행과 같음)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현행과 같음)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현행과 같음)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OCR 센터 등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그 밖의 사항(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업적 이용 목적의 반복적 증명발급 제한 (제8조제1항 단서) ○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면제 규정 신설 (제8조제1항제12호, 제13호) ○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 (제8조제1항제14호) ○ 정보공개 수수료 정비(별표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8.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39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 증명” 을 “제증명”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제8조제1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된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

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교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급한 <u>제 증명</u> 과 인허가·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 증명</u> ----- ----- ----- -----.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u>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 증명 등은 제외한다.</u>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 ----- ----- ----- . <u>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u>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u><신 설></u>	13. 「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된(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신 설>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
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
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제3조, 제4조) ○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 접수창구의 설치(제6조) ○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제7조) ○ 장기기증 문화 장려를 위한 홍보활동(제8조) ○ 예우 및 지원(제9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제10조) ○ 포상(제1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8.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40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 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과 보건소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 인터넷 홈페이지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구정소식지 등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관련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수구의회 의원 정수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변경(제3조제2호) - 자치도시위원회 5명 → 6명(증 1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8.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41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정수”를 “위원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명”을 “6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는 다음 과 같이 하며 <u>의원정수</u> 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자치도시위원회 <u>5명</u> 3.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 ----- --- <u>위원정수</u> -----. 1. (현행과 같음) 2. ----- <u>6명</u> 3. (현행과 같음)